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4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1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17나53774 부당이득금
원고, 항소인	1. A
	2. B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도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6가단515182 판결
변 론 종 결	2017. 6. 14.
판 결 선 고	2017. 7. 19.

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 A에게 26,781,720원, 원고 B에게 53,039,4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. 1. 20.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8-24

이 유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 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들의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손왕석

판사 김청미

판사 정경희